

2005. 12.

— 2006年度忠清北道歲入歲出豫算案 —  
**專門委員 檢討報告**  
《 自治行政局 所管 歲出分野 》



企劃行政委員會

## I.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개요

###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

-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5,733억 4,0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은 1조 5,780억 7,000만원 규모였으나 수정예산 편성으로 47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음

[표 1-1]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예산액	%	예산액	%	증감액	%
<b>일반회계</b>	<b>1,573,340</b>	<b>100.0</b>	<b>1,578,070</b>	<b>100.0</b>	<b>△4,730</b>	<b>△0.3</b>
지방세	384,999	24.5	384,999	24.4		
세외수입	82,856	5.3	83,161	5.3	△305	△0.4
지방교부세	341,371	21.7	341,371	21.6		
보조금	730,114	46.4	736,539	46.7	△6,425	△0.9
지방채	34,000	2.1	32,000	2.0	2,000	6.3

-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조 3,141억 9,000만원 대비 19.7%인 2,591억 5,000만원이 증가 하였음.

[표 1-2] 전년도 예산과의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5년		증 감	
	예산액	%	예산액	%	증감액	%
<b>일반회계</b>	<b>1,573,340</b>	<b>100.0</b>	<b>1,314,190</b>	<b>100.0</b>	<b>259,150</b>	<b>19.7</b>
자주재원	467,855	29.7	393,785	30.7	74,070	18.8
지방세	384,999	24.5	334,540	25.5	50,459	15.1
세외수입	82,856	5.3	59,245	4.5	23,611	40.0
의존재원	1,071,485	68.1	920,405	69.3	151,080	16.4
지방교부세	341,371	21.7	323,393	24.6	17,978	5.6
보조금	730,114	46.4	597,012	45.4	133,102	22.3
지방채	34,000	2.1	-	-	34,000	

○ 자주재원은 4,678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937억 8,500만원 대비 18.8%인 740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9.7%을 점유하고 있음

- 지방세는 3,849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345억 4,000만원 대비 15.1%인 504억 5,900만원 증가, 점유율 28.5%.

- 세외수입은 828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92억 4,500만원 대비 40.0%인 236억 1,100만원이 증가, 점유율 5.3%

※ 당초예산 83,161 - 수정예산 82,856 = △305백만원

○ 의존재원은 1조 714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204억 500만원 대비 16.4%인 1,510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68.1%을 점유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3,413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233억 9,300만원 대비 5.6%인 179억 7,800만원 증가, 점유율 21.7%

- 보조금은 7,301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970억 1,200만원 대비 22.3%인 1,331억 200만원 증가, 점유율 46.4%

※ 당초예산 736,539 - 수정예산 730,114 = △6,425백만원

○ 200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675억원이며 당초예산 발행 규모는 발행한도액의 50.4%인 340억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2.1%을 점유하고 있음.

- 지방도 정비사업 230억원 (당초예산)

- 오송컨벤션센터 건립 65억원 ( " )

- 오창외국인전용단지 25억원 ( " )

- 영동소방서 및 오송파출소 건축 20억원 (수정예산)

[표 1-3] 수정예산

(단위 : 백만원)

세입과목	수정예산	구성비	당초예산	구성비	증감	증감율
<b>합 계</b>	<b>1,573,340</b>	<b>100.0</b>	<b>1,578,070</b>	<b>100.0</b>	<b>△4,730</b>	<b>△0.3</b>
자주재원	467,855	29.7	468,160	29.7	△305	△0.1
지방세수입	384,999	24.5	384,999	24.4		
보통세	279,338	17.8	279,338	17.7		
취득세	130,949	8.3	130,949	8.3		
등록세	145,969	9.3	145,969	9.2		
면허세	2,420	0.2	2,420	0.2		
목적세	99,764	6.3	99,764	6.3		
공동시설세	11,496	0.7	11,496	0.7		
지역개발세	2,534	0.2	2,534	0.2		
지방교육세	85,734	5.4	85,734	5.4		
지난년도수입	5,897	0.4	5,897	0.4		
세외수입	82,856	5.3	83,161	5.3	△305	△0.4
경상적세외수입	19,843	1.3	19,823	1.3	20	0.1
재산임대수입	302	0.0	302	0.0		
사용료수입	3,911	0.2	3,911	0.2		
수수료수입	1,884	0.1	1,884	0.1		
사업수입	502	0.0	502	0.0		
징수교부금수입	4,399	0.3	4,379	0.3	20	0.5
이자수입	8,845	0.6	8,845	0.6		
임시적세외수입	63,012	4.0	63,338	4.0	△325	△0.5
재산매각수입	2,818	0.2	2,818	0.2		
순세계잉여금	42,000	2.7	42,000	2.7		
전입금	2,589	0.2	2,589	0.2		
융자금원금수입	3,000	0.2	3,000	0.2		
부담금	9,313	0.6	9,639	0.6	△325	△3.4
잡수입	3,192	0.2	3,192	0.2		
지난년도수입	100	0.0	100	0.0		
의존재원	1,071,485	68.1	1,077,910	68.3	△4,425	△0.4
지방교부세	341,371	21.7	341,371	21.6		
보조금	730,114	46.4	736,539	46.7	△6,425	△0.9
지방채	34,000	2.1	32,000	2.0	2,000	6.3
차입금	2,000	0.1	0		2,000	
지역개발기금	32,000	2.0	32,000	2.0		

[표 1-4] 연도별 증가율

(단위 : 백만원)

세입과목	2006년	2005년	2004년	06/05년 대비		05/04년 대비	
				금액	%	금액	%
합 계	1,573,340	1,314,190	1,248,949	259,150	19.7	65,241	5.2
자주재원	467,855	393,785	383,989	74,070	18.8	9,796	2.6
지방세수입	384,999	334,540	307,788	50,459	15.1	26,752	8.7
보통세	279,338	230,290	211,768	49,048	21.3	18,522	8.7
취득세	130,949	100,079	90,774	30,870	30.8	9,305	10.3
등록세	145,969	127,940	118,921	18,029	14.1	9,019	7.6
면허세	2,420	2,271	2,073	149	6.6	198	9.6
목적세	99,764	99,050	91,116	714	0.7	7,934	8.7
공동시설세	11,496	12,130	11,255	△634	△5.2	875	7.8
지역개발세	2,534	2,443	2,206	91	3.7	237	10.7
지방교육세	85,734	84,477	77,655	1,257	1.5	6,822	8.8
지난년도수입	5,897	5,200	4,904	697	13.4	296	6.0
세외수입	82,856	59,245	76,201	23,611	40.0	△16,956	△22.3
경상적세외수입	19,843	19,547	18,142	296	1.5	1,405	7.7
재산임대수입	302	273	238	29	10.7	35	14.7
사용료수입	3,911	3,789	3,446	122	3.2	343	10.0
수수료수입	1,884	1,976	1,921	△92	△4.7	55	2.9
사업수입	502	620	654	△118	△19.1	△34	△5.2
장수교부금수입	4,399	4,354	3,108	45	1.0	1,246	40.1
이자수입	8,845	8,535	8,775	310	3.6	△240	△2.7
임시적세외수입	63,012	39,698	58,059	23,314	58.7	△18,361	△31.6
재산매각수입	2,818	2,456	2,474	362	14.8	△19	△0.8
순세계잉여금	42,000	20,000	24,000	22,000	110.0	△4,000	△16.7
전입금	2,589			2,589			
융자금원금수입	3,000	3,000	3,000	0	0.0	0	0.0
부담금	9,313	9,371	8,731	△58	△0.6	640	7.3
잡수입	3,192	4,797	19,754	△1,605	△33.4	△14,957	△75.7
지난년도수입	100	75	100	25	33.3	△25	△0.3
의존재원	1,071,485	920,405	730,453	185,080	20.0	189,952	26.0
지방교부세	341,371	323,393	272,966	17,978	5.6	50,427	18.5
보조금	730,114	597,012	457,487	133,102	22.3	139,525	30.5
지방채	34,000			34,000			
차입금	2,000			32,000			
지역개발기금	32,000			32,000			

[표 1-5] 과목별 구성비

(단위 : 백만원)

세 입 과 목	2006년	구성비	2005년	구성비	2004년	구성비
<b>합 계</b>	<b>1,573,340</b>	<b>100.0</b>	<b>1,314,190</b>	<b>100.0</b>	<b>1,248,949</b>	<b>100.0</b>
자 주 재 원	467,855	29.7	393,785	30.0	383,989	30.7
지방세수입	384,999	24.5	334,540	25.5	307,788	24.6
보 통 세	279,338	17.8	230,290	17.5	211,768	17.0
취 득 세	130,949	8.3	100,079	7.6	90,774	7.3
등 록 세	145,969	9.3	127,940	9.7	118,921	9.5
면 허 세	2,420	0.2	2,271	0.2	2,073	0.2
목 적 세	99,764	6.3	99,050	7.5	91,116	7.3
공동시설세	11,496	0.7	12,130	0.9	11,255	0.9
지역개발세	2,534	0.2	2,443	0.2	2,206	0.2
지방교육세	85,734	5.4	84,477	6.4	77,655	6.2
지난년도수입	5,897	0.4	5,200	0.4	4,904	0.4
세 외 수 입	82,856	5.3	59,245	4.5	76,201	6.1
경상적세외수입	19,843	1.3	19,547	1.5	18,142	1.5
재산임대수입	302	0.0	273	0.0	238	0.0
사용료수입	3,911	0.2	3,789	0.3	3,446	0.3
수수료수입	1,884	0.1	1,976	0.2	1,921	0.2
사 업 수 입	502	0.0	620	0.0	654	0.1
장수교부금수입	4,399	0.3	4,354	0.3	3,108	0.2
이 자 수 입	8,845	0.6	8,535	0.6	8,775	0.7
임시적세외수입	63,012	4.0	39,698	3.0	58,059	4.6
재산매각수입	2,818	0.2	2,456	0.2	2,474	0.2
순세계잉여금	42,000	2.7	20,000	1.5	24,000	1.9
전 입 금	2,589	0.2	0	0.0	0	0.0
융자금원금수입	3,000	0.2	3,000	0.2	3,000	0.2
부 담 금	9,313	0.6	9,371	0.7	8,731	0.7
잡 수 입	3,192	0.2	4,797	0.4	19,754	1.6
지난년도수입	100	0.0	75	0.0	100	0.0
의 존 재 원	1,071,485	68.1	920,405	70.0	864,960	69.3
지방교부세	341,371	21.7	323,393	24.6	272,966	21.9
보 조 금	730,114	46.4	597,012	45.4	457,487	36.6
지방양여금					134,507	10.8
지 방 채	34,000	2.1				
차 입 금	2,000	0.1				
지역개발기금	32,000	2.0				

## 2. 2005년도 자치단체별 예산지표

구분 시도별	재정자립도	주민 1인당 자체 수입액	주 민 1 인당 지방세부담액	주민 1인당 세외수입액
평 균	56.2%	888천 원	694천 원	194천 원
서 울	95.0	954	853	100
부 산	70.6	646	555	91
대 구	72.6	597	502	95
인 천	66.3	638	595	42
광 주	54.6	553	458	95
대 전	71.0	630	549	82
울 산	63.7	654	566	88
경 기	70.3	503	485	19
강 원	22.4	334	270	63
충 북	25.2	265	225	40
충 남	29.0	347	274	73
전 북	17.9	226	193	32
전 남	11.9	195	160	35
경 북	22.4	237	211	25
경 남	29.8	328	278	50
제 주	30.3	538	434	105

## II. 2006년도 재정운영 여건

### 1. 국가재정 여건

- 국내경제는 2005년 경제성장률 3.7% 대비 1%포인트 높은 4.7%의 실질성장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기회복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IMF, KDI, NABO, 기업연구원 등 발표 기관에 따라 4.7%~5.0%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가계의 유동성 제약이 완화되고 고용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내수가 경제성장을 주도하여 민간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소기업과 서비스기업의 설비투자를 자극할 것으로 기대됨.
  - 수출은 양호한 증가세를 보일것이나 유가 및 원자재 가격상승, 미국과 중국의 성장둔화에 따라 2005년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는 내수경기 회복, 고유가 지속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세입 증가폭은 크지 않은 반면, 세출소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
    - 국세수입은 2005년 국세수입 예산 대비 4조원을 상회하는 세수부족 예상
    - 정부는 재원확보를 위해 2006년도에 9조원의 국채발행 계획
    - 세출소요는 공적자금 상환, 교부금, 사회보장 지출 등 경직성 경비소요가 대폭 증가하고
    - 미래 성장동력 확충, 삶의 질 향상 등을 중심으로 지출소요 증가



[표 2-1] 2006년도 국가 주요경제지표 전망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 (%)	7.0	3.1	4.6	3.0	4.3	3.7	4.7
민간소비 (%)	7.9	-1.2	-0.5	2.1	3.5	2.8	4.2
설비투자 (%)	8.4	-1.2	3.1	3.0	3.5	3.3	5.8
건설투자 (%)	5.3	7.9	1.1	-0.2	4.1	2.1	1.2
소비자물가 (%)	2.7	3.6	3.6	3.2	2.7	2.9	3.2
실업률 (%)	3.3	3.6	3.7	3.9	3.6	3.8	3.7
경상수지 (억\$)	54	120	276	87.1	71.2	158.3	117.7
수출 (통관기준) (%)	8.0	19.3	31.0	10.8	14.3	12.6	10.8
수입 (통관기준) (%)	7.8	17.6	25.5	14.8	17.8	16.3	11.7
국고채수익률(평균) (%)	5.8	4.6	4.1	3.9	4.5	4.2	4.8
원/달러 환율 평균	1,251	1,192	1,145	1,015	1,031	1,023	1,010

- 주) 1. 설비투자는 무형고정자산 포함.  
 2. 실업률 구직기간은 4주기준 임.  
 3. 2005년 하반기, 연간과 2006년은 전망치  
 - 정부에서는 경제성장률을 5%로 전망하고 있음

자료 : NABO (국회예산정책실)

## 2. 우리도 재정여건

-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구조의 건전화 노력 절실
  - 민선자치시대 10년의 지방재정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교훈을 재조명하고
  - 2006년도를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새로운 한해로 정착
- 내년도 세입여건은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이나 세출소요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
  - 내년도 실질성장율을 5% 내외로 전망함으로 세입은 금년에 비해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입법 및 세부 후속조치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변동이 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불안정한 재정수입을 감안할 때 엄격한 재정관리가 필요함
  - 의존수입도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전년도보다 증가폭이 상당히 감소되었음
  - 반면 세출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지역경제활성화와 균형개발 촉진, 지역SOC 투자, 도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지원확대, 제4대 지방동시선거 등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
- 증가하는 세출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영 절실
  - 전시성·행사성·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확행,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 추진

### 3. 국가예산과의 비교

- 중앙정부의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 8.4%가 증가된 145조 7,029억원으로
  - 국세수입은 2005년 국세수입 예산 대비 4조원을 상회하는 세수부족이 예상되나 미래 성장동력 확충, 삶의 질 향상 등을 중심으로 지출소요 증가로 국채 9조원을 발행하여 예산 편성
  
- 충청북도의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 19.7%가 증가된 1조 5,733억원으로
  - 세입여건은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지방세수 목표는 2004년도 대비 6.4%가 증가한 15.1%, 지방채 발행 340억원 등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있음.

[ 표 2-2] 정부예산과의 비교

구 분	정 부 (조원)			충청북도 (억원)		
	2005년	2006년	증감(%)	2005년	2006년	증감(%)
합 계	514.2	561.7	9.2	19,705	23,027	16.9
예 산	195.0	203.1	4.2	17,548	20,055	14.3
일반회계	134.4	145.7	8.4	13,142	15,733	19.7
특별회계	60.6	57.4	△5.3	4,406	4,322	△1.9
기 금	319.2	358.6	12.3	2,157	2,972	37.8

### Ⅲ. 지방세수 추계

#### 1. 지방세수 여건

- 정부의 8. 31 「부동산 종합대책」이 보유에 대하여는 중과세 하면서도 거래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부동산 거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 거래세에 대한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요인과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에 따른 과세표준액 인상 등 세수 증가요인이 병존하고 있어
- 부동산종합대책 입법 및 세부 후속조치의 확정 내용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변동폭이 클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오창과학산업단지내 대단위 공동주택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취·등록세수가 증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 자동차의 등록은 유가인상 및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 침체로 감소추세가 계속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 추계방법

- 이동평균법과 진도비법에 의한 추계방법을 사용하였음
  - 이동평균법 =  $\{(2005년\ 목표액 \times 5년간\ 평균증감율) + (2005년\ 징수전망액 \times 5년간\ 평균증감율)\} \times 1/2$
  - 진도비법 = 2005년 징수전망액 + (증가요인-감소요인)
    - 증감요인 : 최근 및 익년도 경제동향, 세법개정 효과, 지역적 특성 등
- 부동산 세수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입법 및 세부 후속조치의 확정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변동폭이 클것으로 예상되어 추계액중 10%를 당초예산에서 유보하였음.

[ 표 3-1 ] 세입 추계시 검토사항

예산과목		검토(예시)사항	비고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공시지가 상승율 평균신장율 부동산경기(토지거래,건축허가 등) 및 자동차 등록사항등	
	면허세	과세대상 및 기준 각종인·허,신고,등록 등 추이분석	
	공동시설세	평균신장율 재산세증가요인중 부과대상 연계 검토	
	지역개발세	과세대상 및 기준(발전용수 비율이 76.9%로 강수량 변동추이)	
	지방교육세	해당세목(6개세목) 세율적용	
	지난년도수입	당해연도 징수목표액(체납액 심층분석)	
세외수입	재산임대 수입	유무상임대재산, 유희재산 및 임대가능재산 검토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현실화계획 각종 징수조례 등 근거법령의 개·제정 사항 신규발생수입원 등	
	징수교부금 수입	각종 부담금 등에 대한법정요율 적용 추가징수분에 대한 정산분 등	
	이자수입	전체세입규모 전망 공공채 금리등 은행금리 전망	
	재산매각 수입	당해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파악 도시계획관련 법규 등 각 개별법에 의해 매 각되는 재산 검토	
	지난년도수입	체납액 심층 분석 필요	
	잡수입	수입내용과 성질을 면밀히 검토 정당한 세입 항목 계상 필요	

### 3. 지방세 추계

#### 가.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동평균법 A	진도비법 B	추계액 $C=(A+B)/2$	유보액 $C \times 10\%$	당초예산 편성액
취 득 세	133,804	149,328	141,566	10,617	130,949
등 록 세	156,607	159,002	157,804	11,835	145,969
면 허 세	2,545	2,387	2,420	0	2,420
공동시설세	12,214	10,778	11,496	0	11,496
지역개발세	2,603	2,466	2,534	0	2,534
지방교육세	86,253	85,216	85,734	0	85,734
지난년도수입	6,458	5,336	5,897	0	5,897

#### 나. 이동평균법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표액대비(A)		징수액대비(B)		추 계 액 $(A+B) \times 1/2$
	'05목표액	증감율	'05전망액	증감율	
취 득 세	100,079	10.71	134,510	16.58	133,804
등 록 세	127,940	9.43	153,885	12.55	156,607
면 허 세	2,271	11.03	2,258	5.73	2,454
공동시설세	12,130	8.38	10,382	8.67	12,214
지역개발세	2,443	4.90	2,448	7.98	2,603
지방교육세	84,477	2.29	81,606	5.50	86.253
지난년도수입	5,200	5.39	5,724	29.91	6,458

#### 다. 진도비법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전망액 A	증가요인 B	감소요인 C	추계액 $A+(B-C)$
취 득 세	134,510	42,029	27,211	149,328
등 록 세	153,885	32,704	27,587	159,002
면 허 세	2,258	129	0	2,387
공동시설세	10,382	396	0	10,778
지역개발세	2,448	18	0	2,466
지방교육세	81,606	13,870	10,260	85,216
지난년도수입	5,724	1,712	2,100	5,336

다. 증감요인

: 최근 및 익년도 경제동향, 세법개정 효과, 지역적 특성 등

○ 취득세, 등록세, 지역개발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
증가요인	42,029	32,704	396
오창과학단지 등 10,390세대 분양	34,925	26,634	218
중원호텔, 공장 등 준공	2,335	946	29
과세표준액 증가(건물,주택,공시지가)	4,769	5,124	149
감소요인	27,211	27,587	-
행복도시, 기업도시주변 부동산거래 감소	15,307	13,189	-
'05 골프장 과점주주 취득 →'06요인없음	3,523	765	-
자동차 취득 14.7%정도 감소	3,078	4,684	-
주택거래세율 인하 : 취득세 2.0→1.5% 등록세 1.5→1.0%	5,303	8,949	-

○ 면허세

- 연평균 증가(5.73%)분 반영 129백만원
- 면허세는 정기분 점유율(68.7%)의 비중이 크고, 세수가 안정되어 있어 특별한 증감요인이 없음

○ 지역개발세

- 지하자원 채광세액 평균 증가율(7.5%) 18백만원 반영
- 발전용수에 대한 구성비가 76.9%로 비중이 크고, 강수량에 따라 징수액 변동율이 큰 실정임.

○ 지방교육세

증감요인	금액(백만원)
증가요인	13,870
등록세 증가요인 32,704백만원×20%	6,540
담배소비세 인상분	7,330
감소요인	10,260
등록세 감소요인 22,903백만원×20%	4,580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물량 물량사전 비축 10%	3,665
담배소비 감소 5.5%(보건복지부 통계)	2,015

## IV. 세외수입 추계

### 1. 세외수입 증감요인

(단위 : 천원)

과 목		증 감 사 유	증감액
경상적세외수입	계		296,209
	공유재산임대료	공시지가 상승	29,095
	도로사용료	도로굴착 점용허가 감소	△34,300
	하천사용료	하천점용료 요율 상승	298,000
	입장료수입	청남대 입장객 감소	△134,260
	기타사용료	여성발전센터 시설사용료 감소	△7,130
	증지수입	토목공사 감소로 건설종합본부 토목시험수수료 감소	△95,835
	기타수수료	벼종자수매용 포장재 단가상승	3,506
	사업장생산수입	축산위생연구소 한우·돼지분양 감소	△118,327
	정수교부금수입	생태보전협력금 200,000, 환경개선부담금 △145,740, 배출부과금 △28,800 수질개선부담금(수정예산) 20,000	45,640
	공공예금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증가분	300,000
	기타이자수입	세입세출외현금이자수입 증가분	10,000
	임시적세외수입	계	
국유재산매각수입		국유재산매각면적 증가	30,055
고유재산매각수입		폐천부지,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	332,330
순세계잉여금		세입초과 징수 및 세출잔액 증가	22,000,00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05년도는 1회추경에 편성	2,589,225
자치단체간부담금		충청북도 전자정부통합망사용료 사방사업부담금(당초+수정) 8,584 댐주변정비사업부담금 93,000 공무원교육원교육훈련부담금 624 산림유역관리사업부담금(수정예산) △67,500	580,398
일반부담금		댐주변정비 수자원공사 부담금 △673,000 기타기관전산처리부담금 △30	△673,000
불용품매각대변상금		노후 소방차교체 등 감소	△43,000
과태료및벌칙금수입		사전예고로 위반건수 감소예상	2,290
기타잡수입		오창폐수종말처리장 보전금 438,000 순환수렵장적립금해지수입 1,072,727 분수국유림수익분배적립금 △3,000,000 지역개발전문경력인사연구장려금 △72,000	△2,500
지난년도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25,000



## 2 세외수입 당초예산 추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3년			2002년		
	당초예산	징수결정액	추계율	당초예산	징수결정액	추계율	당초예산	징수결정액	추계율
<b>세 외 수 입</b>	<b>52,201</b>	<b>78,884</b>	<b>66.2</b>	<b>48,068</b>	<b>81,054</b>	<b>59.3</b>	<b>39,927</b>	<b>64,464</b>	<b>61.9</b>
<b>경상적세외수입</b>	18,142	21,421	84.7	15,812	23,644	66.9	15,465	18,701	82.7
국유재산임대료	0	2	-	17	12	141.7	0	31	-
공유재산임대료	238	307	77.5	254	310	81.9	244	290	84.1
도 로 사 용 료	260	310	83.9	230	259	88.8	220	293	75.1
하 천 사 용 료	1,004	1,141	88.0	1,292	894	144.5	1,292	1,058	122.1
입 장 료 수 입	2,006	3,084	65.0	4	1,559	0.3	4	4	100.0
기 타 사 용 료	175	172	102.0	221	187	118.2	214	228	93.9
증 지 수 입	1,869	1,897	98.5	1,764	2,152	82.0	1,641	2,303	71.3
기 타 수 수 료	52	256	20.3	115	98	117.3	78	100	78.0
사업장생산수입	654	677	96.6	449	836	53.7	306	439	69.7
기타사업수입				0	14	-	0	14	-
징수교부금수입	3,109	4,261	73.0	2,720	3,895	69.8	2,720	2,727	99.7
공공예금이자수입	8,105	9,185	88.2	8,105	12,762	63.5	8,105	10,432	77.7
융자금회수이자수입	640	0	-	640	618	103.6	640	616	103.9
기타이자수입	30	129	23.2	1	48	0.2	1	166	0.6
<b>임시적세외수입</b>	<b>34,059</b>	<b>57,463</b>	<b>59.3</b>	<b>32,256</b>	<b>57,410</b>	<b>56.2</b>	<b>24,462</b>	<b>45,763</b>	<b>53.5</b>
국유재산매각수입	260	342	76.0	415	855	48.5	213	270	78.9
공유재산매각수입	2,214	2,818	78.6	2,098	7,867	26.7	1,177	2,691	43.7
융자금회수수입	3,000	3,921	76.5	2,000	3,989	50.1	1,300	3,782	34.4
자치단체간부담금	1,582	1,624	97.4	7,584	9,084	83.5	7,505	7,321	102.5
일 반 부 담 금	7,149	11,478	62.3	10	2,310	0.4	2,703	2,763	97.8
불용품매각대	10	89	11.2	10	66	15.2	10	56	17.9
변 상 금	10	13	76.9	1	7	14.3	1	26	3.8
위 약 금	50	233	21.5	1	168	0.6	1	102	1.0
과태료및법칙금	140	511	27.4	248	599	41.4	198	604	32.8
시도비반환금	200	2,792	7.2	200	3,744	5.3	200	4,351	4.6
기 타 잡 수 입	19,344	32,495	59.5	19,539	27,164	71.9	11,039	22,292	49.5
지난년도수입	100	1,147	8.7	150	1,557	9.6	115	1,505	7.6

- 주) 1. 결산과 관련된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전년도이월사업비, 순세계잉여금과  
 2. 과목 폐지된 쓰레기봉투판매, 재활용품수거판매 수입은 제외

## V. 지방교부세

### 가. 지방교부세 규모

(단위 : 백만원)

세 입 과 목	2006년		2005년		증 감	
	예산액	%	예산액	%	증감액	%
일 반 회 계	1,573,340	100.0	1,314,190	100.0	259,150	19.7
지방교부세	341,371	21.7	323,393	24.6	17,978	5.6
보통교부세	331,900	21.1	320,000	24.3	11,900	3.7
분권교부세	9,471	0.6	3,393	0.3	6,078	179.1

### 나. 지방교부세 제도

- 지방교부세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13%로 자치단체 일반재원으로 활용되는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세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 보전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보전을 위한 분권교부세로 구분 운영

### 다. 제도개선(2005.1.1)

- 지방교부세율 확대 : 내국세 총액의 15%⇒19.13% 상향 조정
  - 보통교부세 : 지방교부세의 90.9% ⇒ 96.0%로 상향 조정
  - 특별교부세 : 지방교부세의 9.1% ⇒ 4.0%로 하향 조정
- 증액교부세 폐지
- 분권교부세 신설 : 보조금중 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분

## Ⅵ. 보 조 금

### 가. 수정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예산액	%	예산액	%	증감액	%
보 조 금	730,114	100.0	736,539	100.0	△6,425	△0.9
국고보조	440,145	60.3	449,028	61.0	△8,883	△2.0
균특회계	251,666	34.5	250,802	34.0	864	0.3
개발계정	225,071	30.8	224,737	30.5	334	0.2
혁신계정	26,595	3.7	26,065	3.5	530	1.0
기 금	38,303	5.2	36,709	5.0	1,594	4.3

### 나. 전년도 대비 비교

(단위 : 백만원)

세 입 과 목	2006년		2005년		증 감	
	예산액	%	예산액	%	증감액	%
일 반 회 계	1,573,340	100.0	1,314,190	100.0	259,150	19.7
보 조 금	730,114	46.4	597,012	45.4	133,102	22.3
국고보조금	440,145	28.0	365,177	27.8	74,968	20.5
균 특 회 계	251,666	16.0	217,074	16.5	34,592	15.9
개발계정	225,071	14.3	195,434	14.9	29,637	15.2
혁신계정	26,595	1.7	21,640	1.6	4,955	22.9
기 금	38,303	2.4	14,761	1.1	23,542	159.5

[표 6-1] 국고보조금 수정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정예산		당초예산		증감	
	당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	증감율
국고보조금	440,145	100.0	449,028	100.0	△8,883	△2.0
외교통상부	305	0.1	227	0.1	78	34.4
행정자치부	31,394	7.1	34,167	7.6	△2,773	△8.1
문화관광부	338	0.1	338	0.1		
농림부	60,748	13.8	60,924	13.6	△176	△0.3
산업자원부	9,305	2.1	10,678	2.4	△1,373	△12.9
정보통신부	700	0.2	700	0.1		
보건복지부	145,197	33.0	145,060	32.3	137	0.1
환경부	79,119	18.0	79,069	17.6	50	0.1
노동부	195	0.0	485	0.1	△290	△59.8
여성가족부	38,585	8.8	38,585	8.6		
건설교통부	27,438	6.2	27,438	3.1		
해양수산부	1,500	0.3	1,500	0.3		
문화재청	6,949	1.6	8,015	1.8	△1,066	△13.3
농촌진흥청	4,178	0.9	4,178	0.9		
산림청	26,612	6.0	28,369	6.3	△1,757	△6.2
식품의약품안전청	23	0.0	23	0.0		
소방방재청	6,425	1.5	8,143	1.8	△1,718	△21.1
중소기업청	811	0.2	811	0.2		
국무조정실	318	0.1	318	0.1		
청소년위원회	5	0.0	0	0.0	5	-

[표 6-2] 균특회계 수정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정예산		당초예산		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	증감율
<b>균 특 회 계</b>	<b>251,666</b>	<b>100.0</b>	<b>250,802</b>	<b>100.0</b>	<b>864</b>	<b>0.3</b>
개 발 계 정	225,071	89.4	224,737	89.6	334	0.1
행 정 자 치 부	26,235	10.4	25,900	10.3	335	1.3
문 화 관 광 부	21,197	8.4	21,197	8.4		
농 립 부	60,042	23.9	60,042	23.9		
산 업 자 원 부	1,511	0.6	1,511	0.6		
환 경 부	9,948	3.9	9,948	4.0		
건 설 교 통 부	75,625	30.0	75,625	30.2		
해 양 수 산 부	130	0.1	130	0.1		
농 촌 진 흥 청	1,410	0.6	1,410	0.6		
산 립 청	13,422	5.3	13,423	5.3	△1	-
소 방 방 재 청	8,351	3.3	8,351	3.3		
중 소 기 업 청	7,200	2.9	7,200	2.9		
혁 신 계 정	26,595	10.6	26,065	10.4	530	2.0

[표 6-3] 기금 수정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	증감율
<b>기 금</b>	<b>38,303</b>	<b>100.0</b>	<b>36,709</b>	<b>100.0</b>	<b>1,594</b>	<b>4.3</b>
문 예 진 흥 기 금	307	0.8	307	0.8		
관 광 진 흥 개 발 기 금	929	2.4	950	2.6	△21	△2.2
청 소 년 육 성 기 금	1,707	4.5	1,159	3.2	548	47.3
국 민 체 육 진 흥 기 금	1,059	2.8	812	2.2	247	30.4
농 지 관 리 기 금	51	0.1	51	0.1		
복 권 기 금	4,552	11.9	4,551	12.4	1	-
여 성 발 전 기 금	17	0.1	17	0.1	0.3	-
국 민 건 강 증 진 기 금	15,455	40.3	8,704	23.7	6,751	77.6
수 계 관 리 기 금	41	0.1	41	0.1		
축 산 발 전 기 금	1,907	5.0	1,900	5.2	7	0.4
F T A 기 금	11,229	29.3	17,168	46.8	△5,939	△34.6
응 급 의 료 기 금	1,049	2.7	1,049	2.8		

## 다. 보조금 수정예산 전액삭감 및 추가사업

(단위 : 천원)

부처별	사업명	당초예산	수정예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보시스템운영		21,800
농림부	농산어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지원		30,000
	마늘산업경쟁력제고지원		11,520
	과수폐원작업비지원		310,000
	친환경축산직불제		394,000
	납골당 신축	1,050,000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87,648,318	
	주거급여	8 422 028	
	교육급여	2 743 149	
	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		101,700,167
	노인치매요양병원신축	1 519 000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	182 625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50,000
노동부	고용촉진훈련	289 623	
산림청	백두대간생태체험관광캠프조성	96 000	
	백두대간생태교육장조성		96,250
	무선기지국	3 600	
	숲다운숲정비사업		2,683,191
	지역소득사업관리지원		30,000
	친환경밤생산지원		3,000
	관상수도양개량		7,600
	표토지도양개량		7,600
	도시녹지단관리운영		36,000
	백두대간등산로정비		122,240
	백두대간표지석설치		11,530
	예방진화대조장수당		1,800
	산불진화진입로시설		100,000
	방화수림대조성		95,146
	백두대간조사및보호활동		7,662
	백두대간도면수정및유지관리		3,623
	고사목제거사업		53,571
	소방방재청	풍수해보험시범사업	162 952
청소년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지역포럼개최지원		5,000

라. 기금 수정예산 전액삭감 및 추가사업

(단위 : 천원)

부 처 별	사업명	당초예산	수정예산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종합지원센터운영		180,000
	중장기청소년쉼터운영		40,000
	청소년지역토론회개최지원		4,250
	시군청소년지원센터운영		80,000
국민체육진흥기금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		126,360
국민건강진흥기금	응급의료기관발전프로그램운영	405,000	
	외국인근로자검진및진료비	189	
	정신보건전문요원양성사업비	1,000	
	성병및에이즈감염자등록관리	4,789	
	보건소고혈압당뇨사업	41,589	
	소아암백혈병환자의료비	113,924	
	지역암센터건립		3,000,000
	농어촌응급의료기관인건비		350,000
	지역보건의료계획		20,000
	노인치매병요양병원신축		788,031
	농어촌응급의료기관시설장비보강		329,000
	정신보건예방관리사업		1,500
	에이즈감염자등록관리		2,294
	성병검진및치료비		1,476
	심·뇌혈관질환고위험군관리사업		37,000
	한방건강증진(경상보조)		119,500
	한방건강증진(자본보조)		139,200
	의료원장비보강		1,400,000
축산발전기금	밀월식물직재작업		6,400

## Ⅶ. 지방채

### 가. 지방채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예산액	%	예산액	%	증감액	%
일반회계	1,573,340	100.0	1,578,070	100.0	△4,370	△0.3
지방채	34,000	2.1	32,000	2.0	2,000	6.3
차입금	2,000	0.1	0	0.0	2,000	-
지역개발기	32,000	2.0	32,000	2.0	0	0.0

※ 2005년도에는 지방채발행 없음.

### 나. 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차입액	비 고
합 계		34,000	
당초예산		32,000	
	지방도 정비사업	23,000	
	오송컨벤션센터 건립(2007하이테크박람회)	6,500	
	오창외국인 전용단지 조성 부지 매입	25,000	
수정예산		2,000	
	영동소방서 이전 신축	1,700	
	오창파출소 신축	300	

※ 사업계획, 차입조건, 상환계획, 차입선에 대한 자료 및 설명 필요



## 다.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 도입

- 지방재정법(제11조) 개정으로 2006년부터 행자부장관 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채 발행한도제 도입
- 재정상황에 따른 자치단체 유형구분
  - 채무상환비율과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기준으로 자치단체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

[표6-1] 자치단체 유형 기준

구 분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채무상환비율	10%이하	10%이하	10%초과 20%이하	20%초과
예산대비 채무비율	30%이하	30%초과 40%이하	40%초과 80%이하	80%초과

- 지방채 발행 한도액
  - 한도액은 전전년도(2004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 일반재원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기준

[ 표6-2] 유형별 발행 한도액

구 분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발행 한도액 (일반재원대비)	10%이하	5%이하	3%이하	0	
단체수	광역시	11	1	4	0
	기초	224	6	4	0

라. 우리도 발행한도액 : 우리 도는 1유형에 속함

$$○ \text{ 한도액} = \frac{328,288}{\text{지방세}} + \frac{47,033}{\text{경상적세외수입}} + \frac{299,733}{\text{보통교부세}} \times 10\% = 67,500 \text{ 백만원}$$

## Ⅷ. 검토내역 및 의견

### 가. 재정 전반에 대하여

- 정부는 2006년도 GDP 성장률을 5%로 전망함에 따라 세입 증가 폭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세수입은 2005년도 국세수입 예산 대비 4조원을 상회하는 세수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세출소요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 삶의 질 향상 등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조원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이와 같은 국가재정여건은 내년도 지방재정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 우리 도 역시 정부와 마찬가지로 세입 증가 폭은 크지 않은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사회복지 지원 확대, 제4대 지방동시선거 비용 등 세출소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이에 도에서는 재원확보를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 200억 원에서 2006년도에는 420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지방채도 34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의존재원 증가율이 전년도에 비해 8.9% 포인트가 감소하였고, 부동산 세수의 비중이 큰 지방세 역시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입법 및 세부 후속조치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변동이 심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006년도 재정운용은 국가 및 지방의 불안정한 재정수입을 감안할 때 엄격한 재정관리와 보수적 재정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나. 세입예산 규모

-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5,733억 4,000만원으로 당초예산은 1조 5,780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에서 47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전년도 예산 1조 3,141억 9,000만원 보다는 19.7%인 2,591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전체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의 78.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 자체수입은 4,678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937억 8,500만원 대비 18.8%인 740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9.7%을 점유하고 있음
  - 지방세는 3,849억 9,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1%가 증가하였으며, 점유율 28.5%.
  - 세외수입은 828억 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0%가 증가하였으며, 점유율 5.3%
    - ※ 당초예산 83,161 - 수정예산 82,856 = △305백만원
- 의존수입은 1조 714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204억 500만원 대비 16.4%인 1,510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68.1%을 점유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3,413억 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6%가 증가하였으며, 점유율 21.7%
  - 보조금은 7,301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3%가 증가하였으며, 점유율 46.4%
    - ※ 당초예산 736,539 - 수정예산 730,114 = △6,425백만원
- 200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675억원이며 당초예산 발행 규모는 발행한도액의 50.4%인 340억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2.1%을 점유하고 있음.
  - ※ 당초예산 32,000 - 수정예산 34,000 = 2,000백만원

다. 지방세 검토의견

- 지방세는 부동산 세수의 비중이 크고 거래세의 특성상 부동산 경기에 따라 세수의 변동 폭이 심하여 세수추계에 어려움이 있어 그동안 하향 안정적 추계를 하므로써 매년 목표액 대비 20% 이상 과다 징수됨에 따라

목표액 대비 징수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10월
목표액	251,417	264,291	285,880	307,788	334,540
징수액	281,272	340,392	362,268	388,025	324,398
징수율	111.9	128.8	126.7	126.1	97.0

- 2006년도 지방세 추계는 최근 5년간 목표액과 징수액의 이동평균 분석결과와 평균 금액과 진도비법에 의한 추계 방법의 도입으로 지방세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 이동평균법 =  $\{(2005년\ 목표액 \times 5년\ 평균증감율) + (2005년\ 징수\ 전망액 \times 5년\ 평균증감율)\} \times 1/2$

※ 진도비법 = 2005년 징수전망액 + (증가요인-감소요인)

- 이에따라 세입부서에서는 2006년도에 세입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전년도 대비 15.1%(전년도 증가율 8.7%보다 6.4% 증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리고 부동산 세수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정부의 부동산 종합 대책 입법 및 세부 후속조치의 확정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변동폭이 클것으로 예상되어 부동산거래세 추계액중 10%를 당초예산에서 유보하였음.

※ 예산편성 =  $\{(이동평균법 + 진도비법) \times 1/2\} \times 90\%$

- 취득세·등록세는 추계액의 90%, 면허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는 추계액 전액 예산계상

- 이와 같이 2006년도 지방세 추계는 과학적 기법을 도입하므로서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근의 경제상황 및 익년도 경제동향,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편성연도의 특징적 변동사항 등을 충분히 반영함과 아울러 취.등록세 추계액중 부동산거래세액 추계액의 10%를 당초예산에서 유보하는 등 정확한 지방세 추계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이러한 세수추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도비법은 남기가 정해져 있거나 시기별(계절적) 수요가 규칙적인 세목의 추계에 적합한 추계방법으로 지방세 추계에는 한계점이 있으며, 편성연도의 특징적 사항은 실물경제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세수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세외수입 검토의견

-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36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가장 큰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 증가액이 220억원으로 93.2%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의 조령산 자연휴양림 사용료 수입 등 4개사업은 2006년도 부터는 세입이 중단되었습니다.

[표-3] 2006년도 세입추가·중단사업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 업 명	2006년	2005년
사용료수입	조령산자연휴양림	-	4,420
잡 수 입	순환수렵장적립금해지수입	-	39,680
"	분수국유림수익분배적립금	-	3,000,000
"	지역개발전문경력인사연구장려금	-	72,000

- 세외수입은 각 사업부서의 추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회계연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경상적세외수입은 비교적 정확한 추계가 되고 있으나 임시적세외수입은 결산과 관련된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전년도이월사업비,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하더라도 매년 징수결정액 대비 60%이하로 추계가 되고 있어 사업부서의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무교육 등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징수결정액 대비 당초예산 추계율

구 분	2004년	2003년	2002년
세 외 수 입	66.2%	59.3%	61.9%
경상적세외수입	84.7%	66.9%	82.7%
임시적세외수입	59.3%	56.2%	53.5%

※ 당초예산에 추계가 어려운 결산과 관련된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순세계잉여금은 제외한 추계율임

- 수정예산에서 증액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천만원, 사방사업부담금 감액 2억 5,824만 2천원, 산림유역관리사업부담금 감액 6,750만원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마. 지방교부세 검토의견

- 지방교부세는 2005년도에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의 15%에서 19.3%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18.5%가 증가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증가율이 5.6%로 둔화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교부금액을 전액 편성하는 것으로 교부금액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행정자치부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왔으나 2004년도 감사원의 지방교부세에 대한 감사결과에 의하면

- 행정자치부는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입액 항목에 합산하여야 할 자치구의 경상세외수입 추계액을 누락시킨 채 보통교부세를 산정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6개 광역시에는 보통교부세 2,602억여원이 더 교부된 반면, 8개도 및 155개 시군에는 같은 금액만큼 적게 교부되었으며.
- 기준재정수입액을 지방세 추계액의 80%로 산정한 후 다음연도에 이를 보정할 때에는 결산액과 추계액 간의 차액의 50%만 다음연도의 기준재정수입액에 정산하도록 한 결과 지방세가 과소 추계된 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가 더 많이 배분되고 있는 등 교부세 산정의 신뢰성과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는바
- 정당한 교부세를 교부받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에 대한 연구 통해 교부세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바. 보조금 검토의견

- 보조금은 당초예산에서 7,365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수정 예산에서 64억 2,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88억 8,3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8억 6,400만원이 6,6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기금은 15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지방재정력 보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방비 부담으로 인한 자치단체의 재정압박과 경직성을 초래하는 한

편 중앙정부의 일방적 보조내시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정부의 행·재정적 감독으로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뿐만아니라

- 지방비부담능력이 없어 보조사업을 포기할 경우 재정력이 양호한 자치단체 위주로 보조사업이 수행됨으로써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와 불균형을 초래하며,
- 매년 수정예산이 보조금으로 인하여 편성되고 있어 지방재정운영에도 지방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나 오히려 보조금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 보조금 증가율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5년		2004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일반회계	1,573	100.0	1,314	100.0	1,249	100.0
보 조 금	730	46.4	597	45.4	458	36.6

- 보조사업을 교부세로 전환시키는 노력과 함께 포괄보조금제나 재정력을 감안한 차등보조율 적용 등 보조금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건의 등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수정예산 편성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납골당 신축 등 16개사업은 전액 삭감되었고,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 등 41개 사업은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취소 또는 추가 사유가 정부의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것인지 우리도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바. 지방채 검토의견

- 지방채 발행은 2006년부터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실시에 따라 채무상환 비율과 예산대비 채무비율에 따라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정한 한도 범위내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도록하고 있습니다.
- 우리도의 2006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675억원이며 발행규모는 340억원으로 발행내역은 지방도 정비사업 230억원, 오송컨벤션센터 건립비 65억원, 오창외국인전용단지 조성 25억원, 영동소방서 이전 신축 17억원, 청주소방서 오창파출소 신축비 3억원으로
- 지방채는 그동안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제도하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수해복구사업과 청사건립외에는 비교적 발행이 자제되어 왔습니다만 지방의회 승인제도로 변경된 2006년에는 34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소방관서 건립비 20억원은 수정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채 발행 사유와 소방관서 건립비의 수정예산 편성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는 지방채발행 사업명과 발행금액만 표기되어 있어 심도있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계획과 지방채 발행사유, 차입조건, 발행한도액 산출근거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며, 예산총칙 제4조에서 지방채발행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총칙에서 발행한도액과 발행규모를 알 수 있도록 발행액도 표기함이 효과적이라고 사료됩니다.

□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구 분	2006년도 예산안	구성비 (%)	2005년도 예산안	구성비 (%)	증 감	증감율 (%)
합 계	248,929,554					
당초예산	248,556,177	잘못된 계산식	221,673,011	잘못된 계산식	27,256,543	잘못된 계산식
수정예산	373,377					
인 건 비	539,110	잘못된 계산식	408,216	잘못된 계산식	130,894	잘못된 계산식
물 건 비	8,736,937	잘못된 계산식	5,664,835	잘못된 계산식	3,072,102	잘못된 계산식
이 전 경 비	137,443,957	잘못된 계산식	105,867,312	잘못된 계산식	31,576,645	잘못된 계산식
당초예산	137,280,580					
수정예산	163,377					
자 본 지 출	7,225,550	잘못된 계산식	15,054,648	잘못된 계산식	△7,829,098	잘못된 계산식
당초예산	7,015,550					
수정예산	210,000					
보 전 재 원	9,150,000	잘못된 계산식	9,150,000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내 부 거래	85,834,000	잘못된 계산식	85,528,000	잘못된 계산식	306,000	잘못된 계산식

□ 검토내역 및 의견

-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489억 2,955만 4천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2,216억 7,301만 1천원에 비하여 12.3%인 272억 5,654만 3천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 1조 5,733억 3,951만 9천 대비 12.3%의 비중을 점하고 있음.

○ 증감된 내용을 성질별로 보면

- 인건비            1억 3,089만 4천원            (32.1%)
- 물건비            30억 7,210만 2천원            (54.2%)
- 이전경비        315억 7,664만 5천원            (29.8%)
- 자본지출        △78억 2,909만 8천원            (△52.0%)
- 내부거래        3억 600만원                    (0.4%) 임.

< 세부 내용별로는 >

○ 인건비는 2005년도 보다 1억 3,089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일시사역인부임 단가 인상분과 일용인부 퇴직가산금 증액, 그리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및 복식부기 회계 제도운영 일시사역 인부 증원 등과 관련한 반영분임.

○ 물건비는 2005년도 56억 6,483만 5천원 대비 54.2%인 30억 7,210만 2천원이 증액된 87억 3,693만 7천원을 규모이며,

주요증감 내용은

(단위 : 천원)

과 목 (사업) 명	2006년	2005년	증△감	비고
선택적 후생복지	1,560,000	0	1,560,000	93쪽
공무국외여행여비(POOL)	700,000	420,000	280,000	97쪽
자료관시스템D/B 구축사업	200,000	0	200,000	101쪽
KDI대학원과정 위탁교육비	127,500	60,000	67,500	105쪽
6급이하 공무원 혁신교육	91,200	0	91,200	105쪽
특정수요여비(공무원교육훈련)	800,000	512,500	287,500	106쪽
공무원교육훈련국외여비	265,000	204,400	60,600	106쪽
전기요금(청사,문서고,관사,제2별관)	481,680	408,252	73,428	109쪽
상하수도사용료	84,480	50,880	33,600	110쪽
청소용역	391,698	329,422	62,276	112쪽

※ 물건비 :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 이전경비는 2005년도 1,058억 6,731만 2천원보다 29.8%인 315억 7,664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단위 : 천원)

과 목 (사업) 명	2006년	2005년	증△감	비고
제4회전국동시지방선거자치단체부담금	5,402,915	1,181,906	4,221,009	91쪽
직원영육아보육비지원	576,000	216,000	360,000	106쪽
퇴직예정자해외연수	128,000	64,000	64,000	107쪽
성과상여금	3,138,000	1,840,300	1,297,700	107쪽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7,561,000	6,884,188	676,812	108쪽
퇴직수당부담금	2,128,000	1,738,326	389,674	108쪽
재해보상부담금	190,000	113,121	76,879	108쪽
건강보험부담금	2,720,000	2,562,500	157,500	108쪽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	637,370	535,780	101,590	108쪽
일제강제동원피해신고사실조사	242,793	200,284	42,509	127쪽
지방채이자상환	4,351,095	2,781,435	1,569,750	152쪽
지방세징수교부금	9,127,950	7,560,360	1,567,590	154쪽
재정보전금	98,877,830	83,818,340	15,059,490	154쪽

※ 이전경비 :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출연금, 자치단체등이전, 차입금이자,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 등

○ 자본지출은 2005년도 150억 5,464만 8천원에 비해 52.0%인 78억 2,909만 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단위 : 천원)

과 목 (사업) 명	2006년	2005년	증△감	비고
문서고 시설(전원 및 급수공사)	30,000	0	30,000	102쪽
복무관리시스템	68,500	0	68,500	102쪽
구 경찰청사보수	2,989,200	0	2,989,200	116쪽
구.전경복지회관보수	200,000	0	200,000	116쪽

과 목 (사업) 명	2006년	2005년	증△감	비고
구내식당천정보수공사	115,000	0	115,000	117쪽
동관옥상 휴게공간 설치	30,000	0	30,000	117쪽
보일러실 동력판넬 교체공사	49,650	0	49,650	117쪽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차량구입	20,000	0	20,000	129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220,000	0	220,000	129쪽
노근리사건 위령사업	2,755,000	210,000	2,545,000	134쪽
지방세정표준정보시스템확산사업	214,600	0	214,600	141쪽

※ 자본지출 :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이전,  
공기업자본전출금, 자산취득비 등

- 보전재원은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과 중소기업 지원센터 건립, 지방도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비 등의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2005년도 예산액과 변동없이 9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 보전재원 : 차입금원금상환 등

-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2005년도 855억 2,800만 원 대비 0.4%인 3억 600만 원이 증액된 85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내부거래 :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예탁금 등

### < 이를 종합해 보면 >

- 인건비는 200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과세로운 행정수요 대처를 위한 일용인부 증원에 따른 인부임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편성하였으며,
- 물건비는 사업추진에 따른 제 경비와 보수예산 증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정부담률 인상에 따른 증액 예산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93쪽 선택적 후생복지 예산편성관련 타시·도 운영사례

97쪽 공무국외여행 여비(POOL) 2억 8,000만원 증액 따른  
최근 3년간 국외여행자 증가추세

105쪽 일반교육과정 및 KDI대학원과정 위탁교육비 예산  
증액관련 2004 2005년도 교육이수현황 및 구체적인  
증액사유

106쪽 특정수요여비(공무원교육훈련) 증액관련 사무관승진자  
교육과정이 기존 4주에서 12주로 증가한 사유 등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함.

- 다음, 이전경비는 도세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과 시·군간 재정형평성 도모를 위한 재정보전금 등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106쪽 직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 3억 6,000만원 증액관련  
1인당 지원금액이 월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증가한  
사유

107쪽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증액관련 타시·도 운영사례

123쪽 학생근로활동 보상금 계상관련 본 사업의 지속 추진  
필요성내지 당위성

136쪽 도민아이디어 우수제안자 시상금 300만원과 137쪽  
혁신마일리지 시상금 530만원은 각각 총무과 예산  
100쪽 민간인 및 민간단체 시상금 POOL예산과 107쪽  
공무원 및 기관표창 POOL예산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검토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

148쪽 자산(토지)현지 실사 사업비 5,002만 5천원 계상관련  
필지당 1만 5천원 소요근거 및 개략적인 사업추진방법

149쪽 시설장비유지비중 청주의료원 구병동 건물 유지비가  
2,627만원으로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활용실태와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해 보충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자본지출 중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116쪽 구 경찰청사 보수 사업비 29억 8,920만원 계상에 앞서 단기적으로는 현 건물을 보수하여 사용하는 것이 예산 절감내지 효과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건물 노후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

129쪽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계상관련 자치센터 설치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추진계획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33쪽 도청주차장 유료관리시스템 설치 1억 2,500만원 계상관련 유료화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